

	안산대학교 온라인 출판물 출판 규정	규정번호	3-5-5
		제정일자	2003.03.01.
		개정일자	2020.06.01.
		개정차수	3차
		소관부서	교무입학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 교육이념의 구현과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온라인 교재 출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온라인 교재란 인터넷상에서 운영되어지며 동영상(또는 음성)과 텍스트로 구성된 교재 및 부교재를 말한다.

제3조(사업) 온라인 교재 출판의 사업은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재 및 부교재를 제작, 인터넷상으로 공개하여 학생들에게 공간과 시간상의 제한 없이 학문과 신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한다.

1. 교재 및 부교재
2. 일반 교양도서
3. 학술도서 등

제4조(심의위원회) 대학 온라인 교재 제작 및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온라인 출판물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교무입학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전략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학술정보원장으로 하여 온라인교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제5조(온라인교재 출판 심의) ① 온라인 교재 및 부교재를 출판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온라인 출판물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1. 온라인 교재 심의 의뢰서 1부.[별지제1호서식]
2. 온라인 교재 출력물 원고 2부.
- ② 위원장은 제출된 자료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한다.
- ③ 심의규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온라인 교재 분량) 온라인교재는 1학점을 기준으로 주당 20분 분량으로 제작 되어 15주 기준 총 300분 분량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제작 및 DB구축) 저자는 온라인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얻은 후, 계획된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회에서 지정한 사이트에 온라인교재를 탑재하여야 한다.

제8조(출판물표기) ① 온라인교재의 표기에 관한 별도의 협약이 없는 한 발행인은 안산대학교 총장으로 하며, 발행처는 안산대학교 온라인교재출판부로 표기한다.

- ② 온라인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온라인교재는 안산대학교 또는 안산대학교 온라인교재출판부로 명칭을 사용 할 수 없다.

제9조(저작권) 대학에서 발간되는 온라인교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분쟁발생시 모든 책임은 저자가 진다.

제10조(출판물의 연구실적인정) 출판물이 교수의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려면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출판물의 분량은 최소 1학점 기준으로 주당 20분, 15주, 총 300분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안산대학교 온라인교재출판부의 명칭으로 출판된 출판물에 한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로 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온라인출판물 규정은 2003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이미 출판된 온라인출판물에 대하여는 3년 전 출판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